



-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제 안 설 명 서

2022. 11.



남현주 의원

-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제 안 설 명 서

제안자: 남현주 의원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 「지방자치법」 제40조에 따라 2022. 9. 26.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된 달서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월정수당, 여비를 반영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부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 안 제4조제2항 및 별표의 월정수당 지급기준을 2023년도에는 동결하고 2024년부터 2026년까지는 매년 전년도 공무원 보수 인상률 만큼 인상하는 것으로 개정하였으며,

○ 안 제5조에서는 의원이 공무로 여행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3조제1항제3호 별표 6에 따라 여비를 지급하도록 규정하였고, 현행 제6조의 여비지급기준은 법령 중복조문으로 삭제하였습니다.

○ 현행 제7조는 상위법령 개정을 반영하여 삭제하였고, 현행 제8조 및 제9조는 조문 삭제에 따라 각각 제6조 및 제7조로 조문을 정비하였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에 대한 사전조치 사항으로는

-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2022년 11월 4일부터 2022년 11월 15일까지 달서구의회 홈페이지 등에 입법 예고하여 주민의견을 수렴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에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 「지방자치법」 제40조에 따라 의정비 관련 지급 규정을 개정하여 의원의 의정활동비, 월정수당, 여비 지급에 적정을 기하려는 것으로,
- 본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현주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00922056
----------	----------

발의일자: 2022. 11. 4.

발의자: 남현주, 도하석, 황국주, 장호섭,
박정환, 이영빈, 김장관, 정순우

1. 개정이유

- 「지방자치법」 제40조에 따라 의정비심의위원회(2022. 9. 26.)에서 결정된
달서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월정수당, 여비를 반영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2023년~2026년 월정수당 지급기준 변경(안 제4조제2항 및 별표)
 - 2023년 월정수당: '2022년도 월정수당 지급액' (월 2,331,020원)
 - 2024년~2026년 월정수당: 전년도 월정수당에 전년도 공무원 보수인상을
만큼 인상
- 나.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여비지급 기준 반영
(안 제5조, 현행 제6조~제7조 삭제)
- 다. 조문 삭제에 따른 정비 (안 제6조~제7조)

3. 참고사항

- 가. 개정조례안: 붙임 참조
- 나. 관계법령 및 공문
 - 1) 「지방자치법」 제40조,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제35조
 - 2) 달서구의회 의정비 결정 통보 공문
- 다. 비용추계: 비대상
[대구광역시달서구의정비심의위원회-1(2022. 9. 26.)]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중 “별표 1과”를 “별표와”로 한다.

제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5조(여비지급) 의회의원이 본회의 의결, 위원회 의결 또는 의장의 명에 따라 공무로 여행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시행령」제33조제1항 제3호 별표 6에 따른 여비를 지급한다.

제6조 및 제7조를 각각 삭제하고, 제8조 및 제9조를 각각 제6조 및 제7조로 한다.

별표 1을 별표로 하고, 같은 표(종전의 별표 1) 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2를 삭제한다.

별표 3을 삭제한다.

부 칙

이 조례는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월정수당 지급기준(제4조제2항 관련)

연도별	지 급 금 액
2023년	월 2,331,020원
2024년	2023년 월정수당에 2023년 지방공무원 보수인상을 만큼 인상한 금액
2025년	2024년 월정수당에 2024년 지방공무원 보수인상을 만큼 인상한 금액
2026년	2025년 월정수당에 2025년 지방공무원 보수인상을 만큼 인상한 금액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4조(월정수당의 지급) ① (생 략)</p> <p>② 월정수당의 지급기준은 <u>별표 1과 같다</u></p> <p>③ (생 략)</p>	<p>제4조(월정수당의 지급) ① (현행과 같음)</p> <p>② ----- <u>별표와 ---</u></p> <p>③ (현행과 같음)</p>
<p><u>제5조(여비지급) ① 의회의원이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의결이나 의장의 명에 의하여 공무로 여행할 때에는 여비를 지급한다.</u></p> <p><u>② 국내여비는 운임(철도운임, 선박운임, 항공운임, 자동차운임), 현지교통비, 숙박비, 식비로 구분한다.</u></p> <p><u>③ 국외여비는 항공임, 일비, 숙박비, 식비, 준비금으로 구분한다.</u></p>	<p><u>제5조(여비지급) 의회의원이 본회의 의결, 위원회 의결 또는 의장의 명에 따라 공무로 여행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시행령」제33조제1항제3호 별표 6에 따른 여비를 지급한다.</u></p>
<p><u>제6조(여비지급기준) ① 국내여비는 별표 2의 국내여비지급기준표에 의하여 지급한다.</u></p> <p><u>② 국외여비는 별표 3의 국외여비기준표에 의하여 지급한다.</u></p>	<p style="text-align: center;"><u><삭 제></u></p>
<p><u>제7조(의회사무소 소재지 내에서의 출장시의 여비) ① 의회사무실 소재지 내에서의 출장에 있어서는 별표 1에 의한 현지교통비와 식비를 지급한다.</u></p>	<p style="text-align: center;"><u><삭 제></u></p>

<p><u>② 제1항에서 “의회사무실 소재지 내에서의 출장”이라 함은 대구광역 시내에서의 출장이나 여행거리가 12 킬로미터 미만인 출장을 말한다.</u></p> <p><u>제8조 · 제9조 (생 략)</u></p>	<p><u>제6조 · 제7조 (현행 제8조 및 제9 조와 같음)</u></p>
---	---

【관계 법령】

□ 지방자치법

제40조(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① 지방의회의원에게는 다음 각 호의 비용을 지급한다.

1. 의정(議政)자료를 수집하고 연구하거나 이를 위한 보조 활동에 사용되는 비용을 보전(補填)하기 위하여 매월 지급하는 의정활동비
 2. 지방의회의원의 직무활동에 대하여 지급하는 월정수당
 3. 본회의 의결, 위원회 의결 또는 지방의회의 의장의 명에 따라 공무로 여행 할 때 지급하는 여비
- ② 제1항 각 호에 규정된 비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으로 고려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는 금액 이내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다만, 제1항제3호에 따른 비용은 의정비심의위원회 결정대상에서 제외한다.
- ③ 의정비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3조(의정활동비 · 월정수당 및 여비의 지급기준 등) ① 법 제40조제2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말한다.

1. 법 제40조제1항제1호에 따른 의정활동비: 별표 5에서 정하는 의정활동비 지급범위에서 임기만료로 지방의회의원 선거가 있는 해에 선거를 마친 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능력 등을 고려하여 지급할 것
 2. 법 제40조제1항제2호에 따른 월정수당: 의정비심의회가 구성되는 해의 금액을 기준으로 하며, 임기만료로 지방의회의원 선거가 있는 해에 선거를 마친 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주민 수, 재정능력, 지방공무원 보수인상률, 지방의회의 의정활동 실적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것
 3. 법 제40조제1항제3호에 따른 여비: 별표 6에서 정하는 여비 지급범위에서 지급할 것
- ② 제1항에 따른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은 해당 지방의회 소속 공무원의 보수 지급일에 지급한다.

제34조(의정비심의회의 구성) ① 의정비심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의정비심의회의 위원은 교육계·법조계·언론계·시민사회단체, 통·리의 장이나 지방의회의 의장 등으로부터 추천을 받아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위촉한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위원이 다양하게 구성되도록 해야 한다.

③ 위원이 될 수 있는 사람은 의정비심의회가 구성되는 해의 1월 1일을 기준으로 1년 이전부터 계속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관할 구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18세 이상인 사람으로 한다. 다만, 「공직선거법」 제18조에 따라 선거권이 없는 사람, 그 지방자치단체의 소속 공무원·의회의원과 그 배우자·직계존비속·형제자매는 위원이 될 수 없다.

④ 의정비심의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⑤ 의정비심의회 위원의 임기는 위원으로 위촉된 날부터 1년으로 한다.

제35조(의정비심의회의 운영 등) ① 의정비심의회는 그 의정비심의회가 구성된 해의 10월 31일까지 다음 해부터 임기만료에 의한 지방의회의원 선거가 있는 해까지 적용할 법 제40조제1항 각 호에 따른 금액을 결정해야 한다.

② 의정비심의회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의정비심의회는 제1항에 따라 결정된 금액을 지체 없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통보받은 사항을 지체 없이 의정비심의회의 위원명단 및 회의록과 함께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재해야 한다.

⑤ 의정비심의회는 제1항에 따른 금액을 결정하기 위하여 공청회를 실시하거나 객관적이고 공정한 여론조사기관을 통하여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그 결과를 반영해야 한다. 다만, 의정비심의회가 지방공무원의 보수가 인상되는 해의 인상을 범위에서 월정수당을 인상하려는 경우에는 공청회 개최나 의견 수렴을 생략할 수 있다.

⑥ 의정비심의회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지방의회의 의장에게 제1항에 따른 금액의 결정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이나 관계자의 설명을 요청할 수 있다.

⑦ 의정비심의회의 회의는 공개해야 한다. 다만,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한 경우에는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

⑧ 의정비심의회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해당 지방자치단체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⑨ 제1항부터 제8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의정비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 지방자치법 시행령 [별표 5]

지방의회의원 의정활동비 지급범위(제33조제1항제1호 관련)

구 분	의정활동비 지급범위	
	의정자료수집 · 연구비	보조활동비
시 · 도 의 회 의 원	월 1,200,000원 이내	월 300,000원 이내
시 · 군 · 자치구의회의원	월 900,000원 이내	월 200,000원 이내

■ 지방자치법 시행령 [별표 6]

지방의회의원 여비 지급기준(제33조제1항제3호 관련)

1. 국내 여비

구분	준용
시 · 도의회의원	
시 · 군 · 자치구의회의원	「공무원 여비 규정」 별표 2 제1호

비고

1. 지방의회의 회의(위원회의 회의를 포함한다) 당일 출퇴근이 곤란한 원격지 (육로 편도 60킬로미터 이상 지역을 말한다)나 도서지역(수로 편도 30킬로미터 이상 지역을 말한다)에 거주하는 지방의회의원이 회의에 출석하여 숙박하게 되는 경우에는 운임 · 숙박비 및 식비(기준 식비의 3분의 1을 말한다)를 지급할 수 있다.
2. 도서지역의 경우 비고 제1호에도 불구하고 회의시간이나 공식적 행사 등으로 통상적인 이동방법으로 출퇴근이 불가능하여 숙박하게 되는 경우에는 거리에 관계없이 지급할 수 있다.

2. 국외 항공운임

구분	준용
시 · 도의회의원	「공무원 여비 규정」 별표 3의 별표 1 제1호에 해당하는 공무원에 대한 항공운임
시 · 군 · 자치구의회 의장 · 부의장	「공무원 여비 규정」 별표 3의 별표 1 제2호에 해당하는 공무원에 대한 항공운임

3. 국외 여비

구분	준용
시 · 도의회 의장 · 부의장	「공무원 여비 규정」 별표 4 제3호
의장 · 부의장을 제외한 시 · 도의회의원	「공무원 여비 규정」 별표 4 제4호
시 · 군 · 자치구의회 의장 · 부의장	「공무원 여비 규정」 별표 4 제5호

비고: 준비금의 지급에 관하여는 「공무원 여비 규정」 제23조를 준용한다.

■ 공무원 여비 규정 [별표 2] <개정 2015.1.6.>

국내 여비 지급표(제10조부터 제13조까지 및 제16조제1항 관련)

(단위: 원)

구 분	철도운임	선박운임	항공운임	자동차 운임	일 비 (1일당)	숙박비 (1박당)	식 비 (1일당)
제1호	실비 (특실)	실비 (1등급)	실비	실비	20,000	실비	25,000
제2호	실비 (일반실)	실비 (2등급)	실비	실비	20,000	실비 (상한액: 서 울특별시 70,000, 광 역시 60,000, 그 밖의 지역은 50,000)	20,000

비고: 1. 위 표의 제1호란에도 불구하고 별표 1의 제1호가목 중 대통령과 국무총리의 일비와 식비는 실비로 한다.

- 1의2. 공적 항공마일리지를 사용하여 항공운임을 절약한 공무원에 대해서는 일비의 50퍼센트를 추가로 지급하되, 추가로 지급되는 일비 총액은 공적 항공마일리지 사용으로 절약된 항공운임의 범위에서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2. 항공운임이 2개 이상의 등급으로 구분되어 있는 경우에는 별표 3 비고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이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하여 정하는 기준에 따른다.
3. 버스운임은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가 정하는 기준 및 요율의 범위에서 정해진 버스요금을 기준으로 한다.
4. 자가용 승용차를 이용하여 공무로 여행하는 경우의 운임은 표의 제1호란 및 제2호란에 따른 철도운임 또는 버스운임으로 한다. 다만, 공무의 형편상 부득이한 사유로 자가용 승용차를 이용한 경우에는 연료비 및 통행료 등을 지급할 수 있고 구체적인 지급 기준은 인사혁신처장이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5. 운임 및 숙박비의 할인이 가능한 경우에는 할인된 요금을 지급한다.

■ 공무원 여비 규정 [별표 3] <개정 2021. 11. 30.>

국외 항공운임 지급 기준표(제12조제2항 관련)

구분	항공운임
별표 1 제1호에 해당하는 공무원	실비(1등석)
별표 1 제2호에 해당하는 공무원	실비(2등석)

비고: 예산 절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기획재정부장관은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하여 항공운임에 관한 별도의 기준을 정할 수 있다.

■ 공무원 여비 규정 [별표 4] <개정 2021. 5. 25.>

국외 여비 지급표(제16조제1항 관련)

(단위: 미 달러화(\$))

구분	등급	일비	숙박비	식비
1. 별표 1의 제1호가목 에 해당하는 사람(대통령 및 국무총리는 제외한다)	가	60	실비(상한액: 471)	186
	나	60	실비(상한액: 422)	136
	다	60	실비(상한액: 271)	102
	라	60	실비(상한액: 216)	85
2. 별표 1의 제1호나목 에 해당하는 사람	가	50	실비(상한액: 389)	160
	나	50	실비(상한액: 289)	117
	다	50	실비(상한액: 215)	87
	라	50	실비(상한액: 161)	73
3. 별표 1의 제1호다목 에 해당하는 사람	가	40	실비(상한액: 282)	133
	나	40	실비(상한액: 207)	99
	다	40	실비(상한액: 162)	72
	라	40	실비(상한액: 108)	61
4. 별표 1의 제1호라목 에 해당하는 사람	가	35	실비(상한액: 223)	107
	나	35	실비(상한액: 160)	78
	다	35	실비(상한액: 130)	58
	라	35	실비(상한액: 85)	49
5. 별표 1의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가	30	실비(상한액: 176)	81
	나	30	실비(상한액: 137)	59
	다	30	실비(상한액: 106)	44
	라	30	실비(상한액: 81)	37
6. 삭제 <2021. 5. 25.>				

* 비고

- 별표 1의 제1호가목 중 대통령과 국무총리의 일비, 숙박비 및 식비는 실비로 한다.
- 1의2. 공적 항공마일리지를 사용하여 항공운임을 절약한 공무원에 대해서는 일비의 50퍼센트를 추가로 지급하되, 추가로 지급되는 일비 총액은 공적 항공마일리지 사용으로 절약된 항공운임의 범위에서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 국가 및 도시별 등급 구분은 다음과 같다.
 - 가등급: 도쿄, 뉴욕, 런던, 로스엔젤레스, 모스크바, 샌프란시스코, 워싱턴 D.C., 파리, 홍콩,

제네바, 싱가포르

나. 나등급

- 1) 아시아주 · 오세아니아주: 베이징, 사모아, 오스트레일리아, 인도, 일본, 카자흐스탄, 쿠제도, 타이완, 파푸아뉴기니
- 2) 남 · 북아메리카주: 멕시코, 미국, 바베이도스, 세인트루시아, 세인트빈센트그레나딘, 세인트키츠네비스, 아이티, 앤티가바부다, 자메이카, 캐나다, 트리니다드토바고
- 3) 유럽주: 그리스, 네덜란드, 노르웨이, 덴마크, 독일, 러시아, 룩셈부르크, 벨기에, 사이프러스, 스웨덴, 스위스, 스페인, 아이슬란드, 아일랜드, 영국, 오스트리아, 이탈리아, 포르투갈, 프랑스, 핀란드, 헝가리
- 4) 중동 · 아프리카주: 가나, 가봉, 남수단, 남아프리카공화국, 리비아, 모로코, 바레인, 사우디아라비아, 세이셸, 아랍에미리트, 양골라, 에티오피아, 오만, 우간다, 이스라엘, 이집트, 적도기니, 카타르, 코트디부아르, 콩고민주공화국, 쿠웨이트

다. 다등급

- 1) 아시아주 · 오세아니아주: 뉴질랜드, 니우에, 마셜군도, 말레이시아, 방글라데시, 브루나이, 아제르바이잔, 인도네시아, 중국, 키르키즈공화국, 타이, 터키, 투르크메니스탄, 파키스탄, 피지
- 2) 남 · 북아메리카주: 가이아나, 과테말라, 도미니카공화국, 베네수엘라, 벨리즈, 브라질, 아르헨티나, 에콰도르, 우루과이, 칠레, 코스타리카, 파나마
- 3) 유럽주: 라트비아, 루마니아, 리투아니아, 몬테네그로, 불가리아, 세르비아,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 에스토니아, 우크라이나, 체코, 크로아티아, 폴란드
- 4) 중동 · 아프리카주: 기니, 나이지리아, 니제르, 라이베리아, 레바논, 르완다, 말리, 모리셔스, 모잠비크, 보츠와나, 부르키나파소, 상투메프린시페, 세네갈, 수단, 스와질란드, 시에라리온, 아프가니스탄, 알제리, 요르단, 이라크, 잠비아, 중앙아프리카공화국, 카메룬, 케냐, 탄자니아

라. 라등급

- 1) 아시아주 · 오세아니아주: 네팔, 동티모르, 라오스, 몽골, 미얀마, 미크로네시아, 베트남, 스리랑카, 우즈베키스탄, 캄보디아, 타지키스탄, 통가, 필리핀
- 2) 남 · 북아메리카주: 니카라과, 볼리비아, 수리남, 엘살바도르, 온두라스, 콜롬비아, 파라과이, 페루

- 3) 유럽주: 마케도니아, 몰도바, 벨라루스, 보스니아헤르체고비나, 알바니아
 - 4) 중동·아프리카주: 감비아, 기니비사우, 나미비아, 레소토, 마다가스카르, 말라위, 모리타니, 소말리아, 예멘, 이란, 짐바브웨, 튜니지
3. 제2호의 국가 및 도시별 등급 구분에 없는 국가는 여행 또는 근무 예정지에서 제2호의 국가의 수도까지의 거리가 가장 가까운 국가의 등급을 적용한다.
4. 숙박비는 실비 상한액에도 불구하고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실비 상한액보다 낮은 금액을 정액(이하 "할인정액"이라 한다)으로 지급할 수 있으며, 할인정액으로 지급한 경우에는 제8조의2를 적용하지 않는다.

□ 달서구의회 의정비 결정 통보 공문

대구광역시달서구 의정비심의위원회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달서구의회 의정비 결정 통보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5조제1항에 따라 의정비심의위원회(2022. 9. 26.)에서 심의·결정한 달서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월정수당 결정내역을 다음과 같이 통보합니다.

1. 의정활동비: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3조제1항제1호, [별표5]에 따른 금액

2. 월 정수당: 2023년도 동결

2024년부터 2026년까지 매년 전년도 공무원 보수인상을 만큼 인상

※ 지방자치법 제40조제2항에 따라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한 금액 이내에서
지방자치단체조례로 정함

붙임 1. 대구광역시달서구 의정비심의위원회 의결서 사본 1부.

2. 지방자치법 시행령(별표5) 1부. 끝.

대구광역시달서구 의정비심의위원회 위원장

수신자 대구광역시달서구청장, 대구광역시달서구의회의장



담당자 이재진

서기

이재진

간사

76.07.26

위원장

성명재

2022. 9. 26.

협조자

시행 대구광역시달서구
의정비심의위원회- 1

접수

우 42731 대구광역시 달서구 학산로 45 (월성동)

/ http://www.dalseo.daegu.kr

전화번호 053-667-2261 팩스번호 053-667-8333 /

/ 대국민 공개

청렴 올리GO!, 구민행복 올리GO!

의 결 서

안 건	달서구의회 의원 의정비 결정관련 위원회의 운영방법 및 의정비 항목별 지급 기준 금액 결정의 건
의결내용	별지와 같음

위와 같이 의결한다.

2022. 9. 26.

대구광역시 달서구 의정비심의위원회

위 원 장	성 영 태	<u>성 영태</u>
위 원	강 미 영	<u>강 미영</u>
위 원	권 민 경	<u>권민경</u>
위 원	김 기 하	<u>김기하</u>
위 원	김 영 주	<u>김영주</u>
위 원	김 윤 정	<u>김윤정</u>
위 원	김 현 목	<u>김현목</u>
위 원	오 병 현	<u>오병현</u>
위 원	우 성 대	<u>우성대</u>
위 원	전 영	<u>전영</u>

의 결 내 용

□ 의정비심의위원회 회의에 따른 심의·의결 사항

- 위원회의 회의 공개 여부
- 관계 공무원 배석 여부

※ 관련 규정: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5조

□ 심의·의결 결과

- 위원회의 회의: 공개
- 관계공무원 배석 결정: 4명
 - 배석 공무원: 총무과장(간사), 의회협력팀장(서기), 담당자, 속기사

□ 달서구의회 의원 의정비 지급액 심의·의결 사항

- 4년간(2023~2026) 의정활동비 지급액
- 4년간(2023~2026) 월정수당 지급액

※ 관련 규정: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3조

□ 심의·의결 결과

- 의정활동비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3조제1항제1호 [별표 5]에 따른 금액으로 결정
- 월정수당은 2023년도 동결, 2024년부터 2026년까지 매년 전년도 공무원 보수 인상률을 적용 인상하도록 결정함.

■ 지방자치법 시행령 [별표 5]

지방의회의원 의정활동비 지급범위(제33조제1항제1호 관련)

구 분	의정활동비 지급범위	
	의정자료수집·연구비	보조활동비
시·도의회의원	월 1,200,000원 이내	월 300,000원 이내
시·군·자치구의회의원	월 900,000원 이내	월 200,000원 이내